

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 준수지침

제 1 조 대민봉사자세

- ① 대행업체에서는 청소사업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대항구역 내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.
- ② 대행업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환경미화원, 운전원들이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.
- ③ 대항구역내의 청소관련 민원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,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현장 근무자는 반드시 지정된 복장에 업체명과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⑤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.

제 2 조 인력 및 장비관리

- ① 대행업체에서는 대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대행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충분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.
- ② 작업시간외에 도로상 및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, 수거·운반차량, 수하차 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폐기물 운반·수송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차량의 도색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명, 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고 운행하여야 한다.

제 3 조

작업관리

- ①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나 그물망을 치고 운행하여야 한다.
- ② 폐기물의 수송도중 흘날리거나 침출수를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- ③ 수집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폐기물처리시설(노원자원회수시설, 수도권매립지,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등)의 처리장으로 적정 운반하여야 하며, 그 외 하천, 도로변, 임야, 농지 등에 무단투기해서는 안 된다.
- ④ 수도권매립지 수송 차량은 반드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.
- ⑤ 기타 수도권매립지 수송 및 반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연탄재 수집·운반 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- ⑦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련 법규 및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⑧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, 시장은 07:00 이전에, 일반(공동)주택 지역은 09:00 까지 쓰레기 수거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, 특별청소작업, 청소개선, 기타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은 수거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4 조

청소구역내의 순찰

- ① 대행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기·오전·오후 시간대로 나누어 대행구역을 매일 3회 이상 순찰하고 자체 적출사항 및 구청장이나 동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조기순찰 : 06:00 ~ 07:30
 - 오전순찰 : 09:00 ~ 10:30
 - 오후순찰 : 13:00 ~ 16:00
- ② 순찰시 구·동 및 대행업체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순찰조는 통신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.

- ③ 대행업체에서는 월별 순찰계획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시간대 및 노선별로 담당직원이 명시되어야 한다.

제 5 조 부당요금(수고비) 징수자에 대한 조치

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요금(수고비)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회사 자체 내부의 규정에 의한 인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 정당한 행정지시 불응시의 제재

대행업체에서는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사항을 요구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이행치 않을 시는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대행계약 해지, 구역축소 조정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기 타

- ① 대행업체에서는 각종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민원접수 처리대장 및 폐기물수집·운반대장 등 각종 대장 및 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대행업체 대표자 또는 기타 실무자 회의소집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대행업체 벌점기준 (별첨)

위반사항별 벌점 기준

분야별	위 반 사 항	벌점 기준	벌 점	비고
폐기물 수거	·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구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폐기물 수거 지연	회	5	
	·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악취발생 및 오수유출	회	10	
	· 주간에 종량제 봉투 등을 노상에 야적	회	3	
	· 폐기물 수거 후 뒷마무리를 불성실하게 한 때	회	3	
	· 차량이동시 봉투 등을 떨어뜨린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	회	5	
인력관리	· 환경미화원 복무위반(근무복 미착용 등)	회	1	
	· 환경미화원이 주민에 불친절 행위	회	3	
	·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행위	회	20	
차량관리	· 차량을 지정된 장소외 노상에 방치한 때	대	3	
	· 노원자원회수시설, 수도권매립지 차량 반입정지시	회	3	
	· 청소차량 유지관리 불량(세차, 도색 등)	대	5	
차고지관리	· 차고지(차량, 컨테이너) 주변관리 부실시	건	5	
민원처리	· 주민이 신고한 민원처리 지연시	건	2	
	· 동일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시	건	5	
행정지시	· 지시사항 불이행	회	3	
	·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민원야기	회	5	
	·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결근으로 인해 대리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아 수거 2일 이상 지연시	회	5	

◎ 위반사항 조치 기준

- 최초 벌점일로부터 소급하여 90일 동안 벌점누계가 100점 초과 시 계약을 해제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음

- 시행일 : 2014. 1. 1부터

※ 벌점기준 없을 시 유사항목 적용하며, 위반조치 자료는 나열된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